

의안번호	2210671
의 회 인	차규근의원
회 답 일	2025.7.4.
추계번호	25D304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의무규정
2	제4조(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	금융감독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함 1. 재무부차관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3. 금융감독원 원장 4.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5. 예금보험공사 사장 6. 한국은행 부총재 7.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8.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	의무규정
3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4	제17조(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별표 1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2. 별표 2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둠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의무규정
6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함(제1항)	의무규정
7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이와 관련된 검사·제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8	제29조(집행간부 등)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내, 부원장보 4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둠(제1항)	의무규정
9	제3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장이 임면함	의무규정
10	제38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검사 대상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이와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감독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의무규정
11	제47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함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검사 대상 기관의 출연금 3. 검사 대상 기관 납부 분담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의무규정
12	제48조(분담금)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검사 대상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3	제49조(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제5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제52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제57조(집행간부 등)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내, 부원장보 4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둠(제1항)	의무규정
17	제6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장이 임면함	의무규정
18	제64조(업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검사 대상 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과 이와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에 대한 감독과 이와 관련된 조사·감리 3. 제1호의 검사 결과 및 제2호의 조사·감리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4. 금융감독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5.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의무규정
19	제73조(재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함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검사 대상 기관의 출연금 3. 검사 대상 기관 납부 분담금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의무규정
20	제74조(분담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검사를 받는 검사 대상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1	제75조(차입)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재량규정
22	제7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부칙 제5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비용은 금융감독원이 부담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금 융 감 독 위 원 회 설 치· 운 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제4조(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		
3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4	제17조(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		
5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설 치· 운 영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과 업무가 현행과 동일하여,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7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금 융 감 독 원 설 립·운 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제29조(집행간부 등)		
9	제34조(직원의 임면)		
10	제38조(업무)		
11	제47조(재원)		
12	제48조(분담금)		
13	제49조(차입)		
14	제50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15	제52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금 융 소 비 자 보 호 원 설 립· 운 영	
16	제57조(집행간부 등)		
17	제61조(직원의 임면)		
18	제64조(업무)		
19	제73조(재원)		
20	제74조(분담금)		
21	제75조(차입)		
22	제7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23	부칙 제5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2. 상세 사유

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17조¹⁾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제2210672호)²⁾은
현행 금융위원회의 사무 중 금융정책 기능은 재무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승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조·제17조 및
부칙 제2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
-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 기구인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은 감소되는 반면,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
받는 재무부의 인력과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15조 및 「정부조직법」
제8조)
-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재무부 간 인력 조정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원 규모와 이에 따른 재정변동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7조(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2. 별표 2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아. (생략)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예산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재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소관사무 중 국내금융에 관한 사무	재무부장관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 또는 예산처
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나.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운영

- 안 제38조³⁾와 제64조⁴⁾는 현행 금융감독원의 업무 중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승계하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업무를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38조·제52조·제64조 및 부칙 제2조)
- 개정안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인력과 예산은 감소되는 반면, 신설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인력과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29조·제38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7조·제61조·제64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부칙 제5조)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금융감독원의 사업부서 인원(상세내역 첨부자료1)은 다음과 같음

[표 1] 현행 금융감독원 사업부서 인원: 2025.6. 기준

구분	직원	업무지원인력	소계
인원	2,246명	268명	2,514명

주: 임원(원장 1명, 부원장 4명, 감사 1명)과 결원 인원은 제외된 것임

자료: 금융감독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또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예산(수입지출 총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현행법 제46조제1호 및 제3호): 없음
 - 한국은행의 출연금(현행법 제46조제2호): 50억원(2024년 기준)
 - 감독분담금(현행법 제46조제4호): 2,458억원(2024년 기준)
 - 그 밖의 수입(「자본시장법」 제442조에 따른 발행분담금 포함): 1,407억원(2024년 기준)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38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9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이와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감독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64조(업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5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과 이와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에 대한 감독과 이와 관련된 조사·감리
3. 제1호의 검사 결과 및 제2호의 조사·감리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4. 금융감독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5.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표 2] 현행 금융감독원 예산(수입지출) 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정부의 출연금	—	—	—	—	—
	한국은행의 출연금	10,000	10,000	5,000	5,000	5,000
	금융기관의 출연금	—	—	—	—	—
	감독분담금	233,572	231,723	265,745	260,291	245,760
	그 밖의 수입	93,887	113,695	109,625	121,517	140,696
	소계	337,459	355,418	380,370	386,808	391,456
지출	인건비	223,505	229,347	234,398	243,352	252,958
	경상운영비	83,000	87,166	94,803	93,293	83,207
	사업비	24,443	28,038	39,890	38,143	42,221
	기타	6,511	10,867	11,279	12,020	13,070
	소계	337,459	355,418	380,370	386,808	391,456

주: “그 밖의 수입”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에 따른 발행분담금이 포함됨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경영정보공개”(<https://www.fss.or.kr/fss/alio/mngmtInfo/main.do?menuNo=200050>)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금융감독원의 수입 중 감독분담금(현행법 제47조⁵⁾)과 발행분담금(「자본시장법」 제442조⁶⁾)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96.17%임

[표 3] 현행 금융감독원의 수입 총액 대비 분담금 비중: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분담금	감독분담금	233,572	231,723	265,745	260,291	245,760	247,418
	발행분담금	88,617	109,226	97,962	114,162	133,600	108,713
	소계	322,189	340,949	363,707	374,453	379,360	356,132
수입 총액		337,459	355,418	380,370	386,808	391,456	370,302
분담금 비율		95.48%	95.93%	95.62%	96.81%	96.91%	96.17%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경영정보공개”(<https://www.fss.or.kr/fss/alio/mngmtInfo/main.do?menuNo=200050>)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금융감독원 수입의 대부분이 금융기관과 증권 발행인의 분담금 등 민간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분리·운영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 비용도 민간재원으로 충당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가 확대·개편되어 정부의 출연금이 지원될 경우, 현시점에서 양 기관의 조직과 인력 재배치 규모, 정부의 출연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부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

<기획·보험 담당 부원장>	
1. 기획·전략 담당 부원장보 (250명)	
가. 기획조정국 (24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18명, 업무지원인력 1명
나. 감독총괄국 (46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39명
다. 인사연수국 (33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29명
라. 금융시장안정국 (39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31명, 업무지원인력 2명
바. 제재심의국 (33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4명, 업무지원인력 3명
사. 총무국 (68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27명, 업무지원인력 37명
아. 비상계획실 (7명)	- 부서장 1명, 팀원 6명
2. 디지털·IT 담당 부원장보 (183명)	
가. 디지털금융총괄국 (31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5명
나. IT검사국 (29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3명
다. 전자금융감독국 (19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5명
라. 전자금융검사국 (21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16명
마. 가상자산감독국 (22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8명
바. 가상자산조사국 (20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6명
사. 정보화전략국 (41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31명, 업무지원인력 3명
3. 보험 담당 부원장보 (165명)	
가. 보험감독국 (33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7명
나. 보험계리상품감독국 (30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25명
다. 보험검사1국 (37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30명
라. 보험검사2국 (37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30명
마. 보험검사3국 (28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2명
4. 수석부원장 직속 부서 (112명)	
가. 법무국 (21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16명
나. 국제업무국 (28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7명, 업무지원인력 7명
다. 공보실 (19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3명, 업무지원인력 2명
라. 비서실 (23명)	- 부서장 1명, 팀장 1명, 팀원 21명
마. 해외사무소 (21명)	- 부서장 6명, 팀원 10명, 업무지원인력 5명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	
1. 은행 담당 부원장보 (240명)	
가. 은행감독국 (48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41명
나. 은행검사1국 (46명)	- 부서장 1명, 팀장 7명, 팀원 38명
다. 은행검사2국 (42명)	- 부서장 1명, 팀장 7명, 팀원 34명
라. 은행검사3국 (33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7명
마. 금융안정지원국 (35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9명
바. 외환감독국 (36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4명, 업무지원인력 6명
2. 중소기업 담당 부원장보 (154명)	
가. 중소기업감독국 (33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28명

나. 여신금융감독국 (23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9명
다. 중소기업금융검사1국 (34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8명
라. 중소기업금융검사2국 (32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6명
마. 중소기업금융검사3국 (32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5명, 업무지원인력 1명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1.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223명)	
가. 자본시장감독국 (39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33명
나. 자산운용감독국 (46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39명
다. 금융투자검사1국 (43명)	- 부서장 1명, 팀장 7명, 팀원 35명
라. 금융투자검사2국 (44명)	- 부서장 1명, 팀장 7명, 팀원 36명
마. 금융투자검사3국 (38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32명
바. 연금감독실 (13명)	- 부서장 1명, 팀장 2명, 팀원 10명
2.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160명)	
가. 기업공시국 (37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27명, 업무지원인력 3명
나. 공시심사국 (31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24명
다. 조사1국 (29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3명
라. 조사2국 (22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17명
마. 조사3국 (22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17명
바. 공매도특별조사단 (19명)	- 부서장 1명, 팀장 1명, 팀원 17명
3. 전문심의위원³⁾ (119명)	
가. 회계감독국 (28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1명, 업무지원인력 1명
나. 회계감리1국 (37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30명
다. 회계감리2국 (30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4명
라. 감사인감리국 (23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18명
4.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 부서 (51명)	
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51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47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1.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401명)	
가.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28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23명
나.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22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17명
다. 금융민원국 (128명)	- 부서장 1명, 팀장 6명, 팀원 20명, 업무지원인력 101명
라. 분쟁조정1국 (30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23명, 업무지원인력 2명
마. 분쟁조정2국 (33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26명, 업무지원인력 2명
바. 분쟁조정3국 (27명)	- 부서장 1명, 팀장 5명, 팀원 21명
사. 지원 (133명)	
- 부산울산지원 (23명)	- 부서장 1명, 팀장 2명, 팀원 10명, 업무지원인력 10명
- 대구경북지원 (19명)	- 부서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 업무지원인력 8명
- 광주전남지원 (18명)	- 부서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 업무지원인력 7명
- 대전세종충남지원 (19명)	- 부서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 업무지원인력 8명
- 인천지원 (13명)	- 부서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 업무지원인력 7명
- 경남지원 (10명)	- 부서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업무지원인력 5명
- 제주지원 (5명)	- 부서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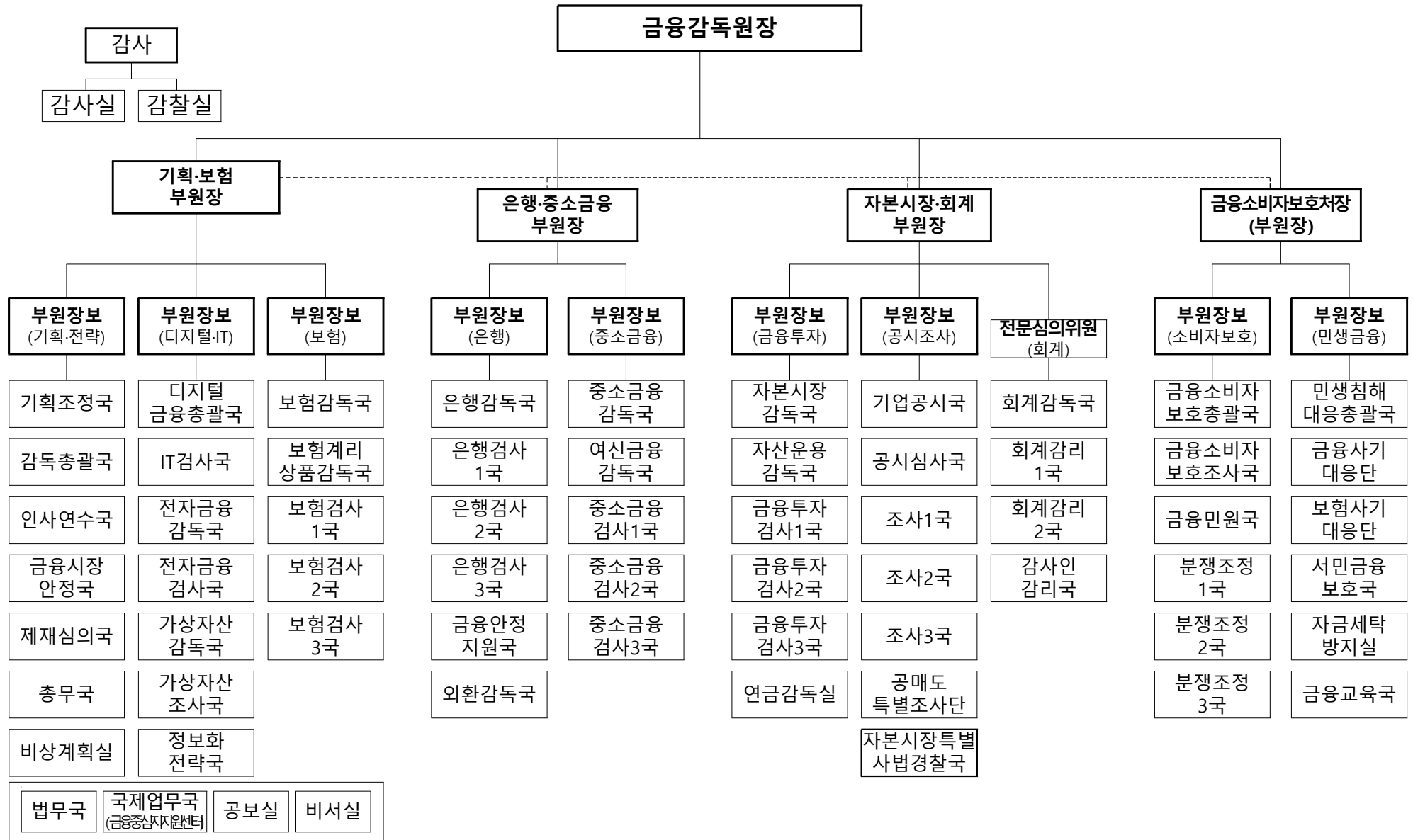
- 전북지원 (7명)	- 부서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업무지원인력 2명
- 강원지원 (6명)	- 부서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업무지원인력 1명
- 충북지원 (7명)	- 부서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업무지원인력 2명
- 강릉지원 (6명)	- 부서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업무지원인력 1명
2.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158명)	
가. 민생침해대응총괄국 (41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13명, 업무지원인력 23명
나. 금융사기대응단 (30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2명, 업무지원인력 14명
다. 보험사기대응단 (22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6명, 업무지원인력 2명
라. 서민금융보호국 (25명)	- 부서장 1명, 팀장 4명, 팀원 20명
마. 자금세탁방지실 (20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6명
바. 금융교육국 (20명)	- 부서장 1명, 팀장 3명, 팀원 16명
<감사>	
가. 감사실 (14명)	- 부서장 1명, 팀장 2명, 팀원 11명
나. 감찰실 (16명)	- 부서장 1명, 팀장 2명, 팀원 13명
<기타>	
연수, 휴직, 파견 등	- 팀원 266명, 업무지원인력 2명
<총 계 : 2,514명> 직원 2,246명, 업무지원인력 268명	

주 1) 부서별 인원은 부서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2) 민원처리전문직원 및 전문사무원 정원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른 회계전문가로, 회계부서 업무를 통할(직원 정원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 지원: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인천, 경남, 제주, 전북, 강원, 충북, 강릉

• 해외사무소: 뉴욕, 런던, 동경, 북경, 프랑크푸르트, 하노이

주) 법무국, 국제업무국, 공보실, 비서실은 기획·보험 부원장 직속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